

—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(안)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0월 16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0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0월 21일

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 이 용 태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하여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규제개혁 모델(규제개혁위원회) 기준으로 한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개정조례안

다. 주요내용

- 보조금의 교부 조건(제7조) : 삭제
- 사정 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·취소(제10조) : 삭제
- 용도외 사용금지(제11조) : 삭제
-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(제12조) : 삭제
- 보조사업의 실적보고(제13조) : 삭제
- 감독(제15조) : 삭제
- 보조사업의 신고(제16조) : 삭제
-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(제17조) : 삭제

라. 참고사항

-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규제개혁모델 안을 토대로 기존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총17개 조항 중 8개 조항을 삭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토록 한 내용으로서 타법이나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